

---

#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

---

2022. 8.



중소벤처기업부

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# 순 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개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|
| II. 납품대금 연동이란? .....                | 2  |
| III.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【별첨】 작성 방법 ..... | 9  |
| IV.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【별첨】 작성 예시 ...    | 20 |
| V.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방법 .....             | 24 |
| VI.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예시 .....            | 28 |

# 2022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

## I. 개요

### 1. 목 적

- 「2022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」(이하 '가이드북')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「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」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, 기준, 예시,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이 수탁·위탁거래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.

※ 「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」는 「하도급대금 연동 모범계약서」와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, 두 양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면 다른 하나를 사용한 것으로도 인정됩니다.

### 2. 기본원칙

- 납품대금 연동의 방식 및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수탁·위탁거래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약정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대한 위험을 수탁기업이 전부 부담하기보다는 상생의 관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은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상생협력법') 제22조의2(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) 및 제25조제1항제4호\*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.

\*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

※ **주의** 이 가이드북은 약정 당사자 등의 참고용으로, 법령의 유권 해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 등을 쉽게 풀어 쓴 부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II. 납품대금 연동이란?

### 1. 납품대금 연동의 개념

- “납품대금 연동”이란 수탁·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납품대금(납품단가 포함)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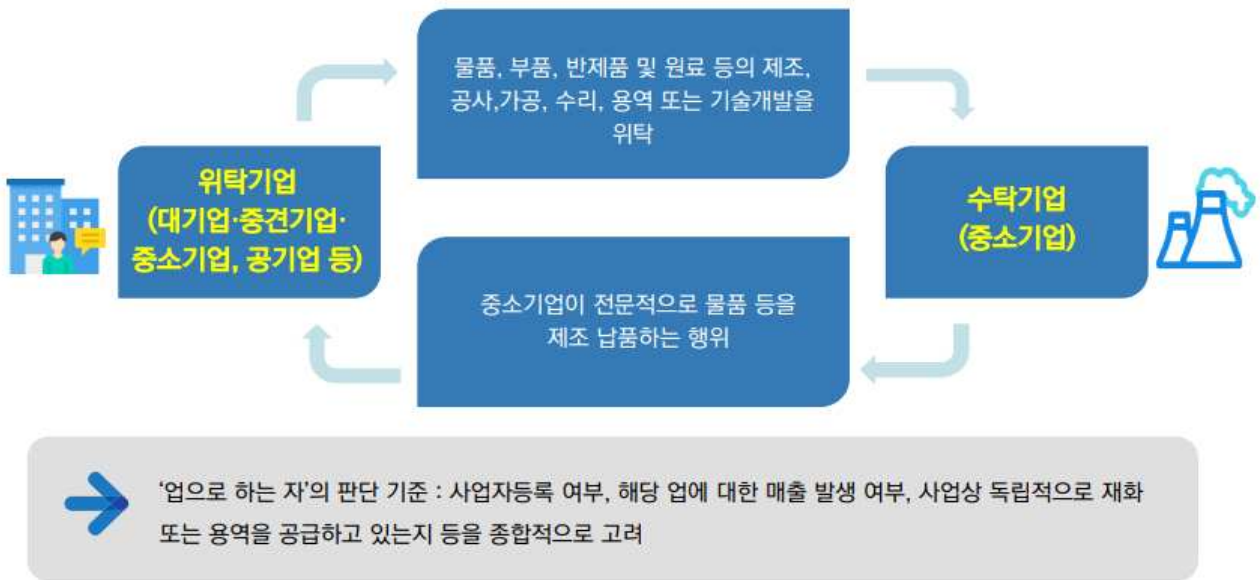
### 2.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대상 : 수탁·위탁거래

- “수탁·위탁거래”란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업(業)으로 하는 자가 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(이하 “물품등”이라 한다)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(이하 “제조”라 한다)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,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(‘상생협력법’ 제2조제4호).
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·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\*은 ‘상생협력법’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,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봅니다. 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)

\*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”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(이하 “평균매출액등”이라 한다)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합니다.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6조)

<수탁·위탁거래의 개념>



□ “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업(業)으로 하는 자”의 범위는 아래 예시를 포함합니다.

| 구분  | 범위  |
|-----|---|
| 제조업 |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 |
| 공사업 |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 |
| 가공업 | 제재 및 목재 가공업, 금속 열처리,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리업 |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,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, 가전제품 수리업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판매업 | 도매업 및 소매업   |
| 용역업 | 전기, 가스, 수도, 운수 및 창고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정보통신업, 부동산관련 서비스업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교육 서비스업 |

□ “업(業)으로 한다는 것”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.

○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,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,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.

### 3. 용어의 정의

- 위탁기업이란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- 외국법인도 무방하고,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은 위탁사업자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정한 경우 대표자가 아닌 위탁사업자 역시 위탁기업에 포함됩니다.
-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-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.
- '주요 원재료'란
  -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(천연재료, 화합물, 가공물,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)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,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합니다.

#### ①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

##### 〈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의 예〉

- 천연재료 : 금, 철, 구리, 알루미늄, 고무, 연, 아연, 주석, 니켈, 석탄, 원유, 원목 등
- 화합물 : 폴리에틸렌, 폴리프로필렌, 폴리염화비닐(PVC) 등

#### ②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

##### 〈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〉

- 금속강, 금속판, 골재, 목재, 시멘트, 레미콘, 콘크리트, 선철, 아스팔트, 화학섬유, 합성수지 등

- ③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

**〈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의 예〉**

자동차 부품, 전기전자부품, 기계부품, 석유화학제품, 철강재, 나사, 강철, 고무 타이어, 전기 센서 및 램프, 시스템반도체, 전동기, 발전기, 변압기, 모듈, 반제품 등

- ④ 그 밖에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원재료

**□ '원재료 가격 기준지표'란**

-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약정체결 당사자가 수탁·위탁거래의 성격, 주요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정합니다.

**□ '원재료 기준 가격'이란**

-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주요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합니다.

**(예)**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(전기동고시가)인 경우, '22년 1월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(전기동고시가)에 따른 동 가격인 11,604,000원/ton이 '22년 1월 동의 기준가격

**□ '조정요건'이란**

-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합니다.

**(예)** 3% 이상 또는 -3% 이하

\*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「별첨」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.

'조정 주기'란

-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합니다.

(예) 1개월

(예) 분기

'조정일'이란

-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합니다.

(예) 매월 1일

(예) 매 분기 말일

'조정대금 반영시점'이란

-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.

- 특별약정서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(예) 매월 1일

(예) 매 분기 말일

'납품대금 연동 산식'이란

-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합니다.

(예) 조정될 납품단가 =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× 동 중량(2kg) + 5,000원



## 4. 납품대금 연동 절차

### □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작성

-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(【별첨】 포함)를 작성하고,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.

### □ 납품대금의 조정

-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,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합니다.
-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합니다.

### □ 「납품단가 변동표」의 작성

-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「납품단가 변동표」에 조정대금 반영시점,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) 또는 기명날인합니다.
- 다만, 「납품단가 변동표」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「납품단가 변동표」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### □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

- 위탁기업은 특별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.
-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전에 수탁·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시점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□ 서류의 비치

-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「별첨」 및 「납품단가 변동표」를 수탁·위탁거래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.

### Ⅲ.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【별첨】작성 방법

【첨부 1】

####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(별첨)

◇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·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 물품등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2. 주요 원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3.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4.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| 기준시점:<br>비교시점: |
| 5. 조정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6. 조정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7. 조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8. 조정대금 반영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9. 납품대금 연동 산식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10.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
◇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

※ **주의** 이하에서 <표> 형태로 제시하는 수치 또는 내용은 모두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예시로서 실제 약정 시 내용은 약정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.

## 1. 물품등의 명칭

□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 또는 기술개발(이하 “제조”라 한다)을 위탁한 물품등으로서, 그 납품대금이 이 특별약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
○ “물품등”은 물품, 부품, 반제품(半製品) 및 원료 등을 말합니다.

○ 예를 들어,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“코팅 용액”을 납품하는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품목을 “코팅 용액”으로 기재합니다. 품목 번호가 있는 경우, 품목 번호도 기재합니다.

○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,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      | 기 재 사 항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. 물품 등의 명칭 | 코팅용액(CC-001) |

| 구 분         | 기 재 사 항   |
|-------------|---|
| 1. 물품 등의 명칭 | 윤활유(LO-001), 윤활유(LO-002), 윤활유(LO-003), 윤활유(LO-004), |

## 2. 주요 원재료

□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중 해당 가격 변동 시,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기재합니다.

○ 주요 원재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.

-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높은 원재료
- 계속적 거래 관계 또는 장기간의 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원재료
- 국내외 가격지표가 명확하거나 위탁기업이 직접 원재료 구매가격을 협상하거나 구매하여 기준가격 설정이 용이한 원재료
- 주 투입 원재료가 단수이거나 여러 원재료가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라도 투입 원재료의 특정 및 원재료별 투입비율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원재료

○ 예를 들어,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코팅용액에 “니켈”이 주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, 수탁·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“니켈”을 주요 원재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(예시) 코팅용액에 사용되는 “니켈”, 동 케이블에 사용되는 “동”,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“시멘트”

| 구 분       | 기 재 사 항 |
|-----------|---------|
| 2. 주요 원재료 | 니켈      |

○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.

| 구 분       | 기 재 사 항 |   |     |
|-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|
| 2. 주요 원재료 | 니켈      | 동 | 시멘트 |

### 3.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

- 납품대금 연동 관련 '주요 원재료 가격'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합니다.
-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(예시) 런던금속거래소(LME, London Metal Exchange), 한국은행(www.bok.or.kr), e-나라지표(www.index.go.kr), 조달청(www.pps.go.kr), 산업통상자원부(www.motle.go.kr),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

| 구 분 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 |
|----------------|---|
| 3.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| LME Nickel Official Price, Cash, Offer, USD/ton |

- 다만,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.
-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

| 구 분 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.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|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|

-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
-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(약정서, 원가내역서, 견적서 등)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

-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.

| 구 분 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 |  |   |
|----------------|---|--|---|
| 2. 주요 원재료      | 니켈  | 알루미늄   | 동   |
| 3.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| LME Nickel Official Price, Cash, Offer, USD/ton | LME Aluminium Official Price, Cash, Offer, USD/ton | LME Copper Official Price, Cash, Offer, USD/ton |

#### 4.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

□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\*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'기준시점'과 '비교시점'을 기재합니다.

\*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특정 시점의 단위당 가격

○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'기준시점' 대비 '비교시점'의 기준가격 증감률을 말합니다. 예컨대,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이 10,000원/kg이고,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이 12,000원/kg이라면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 $\frac{12,000\text{원/kg} - 10,000\text{원/kg}}{10,000\text{원/kg}} * 100 = 20\%$ 입니다.

○ '기준시점'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, '비교시점'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-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한 경우, 이번 조정일이 '22년 5월 10일'이면 비교시점은 '22년 4월'이고,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이 '22년 2월 10일'이면 기준시점은 '22년 1월'이 됩니다.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4.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| 기준시점: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(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)의 전월(평균)<br>비교시점: 조정일의 전월(평균) |

○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,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.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|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
| 2. 주요 원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니켈   | 알루미늄   | 동 |
| 4.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| 기준시점: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(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)의 전월(평균)<br>비교시점: 조정일의 전월(평균) | 기준시점: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(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)의 전 분기(평균)<br>비교시점: 조정일의 전 분기(평균) |   |

## 5. 조정요건

□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기재합니다.

- 예를 들어 3% 이상 또는 -3% 이하로 정한 경우,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  | 기 재 사 항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5. 조정요건 | 3%이상 또는 -3%이하 |

-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조정일마다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.

| 구 분     | 기 재 사 항 |
|---------|---------|
| 5. 조정요건 | 모든 경우   |

-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,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.

| 구 분       | 기 재 사 항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2. 주요 원재료 | 니켈            | 알루미늄           | 동     |
| 5. 조정요건   | 3%이상 또는 -3%이하 | 5% 이상 또는 -5%이하 | 모든 경우 |



## 6. 조정 주기

□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합니다.

○ 조정주기는 일, 주, 월, 분기, 반기, 연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   | 기 재 사 항 |
|----------|---------|
| 6. 조정 주기 | 1개월     |

○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   | 기 재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. 조정 주기 |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|

○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,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.

| 구 분       | 기 재 사 항 |   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|
| 2. 주요 원재료 | 니켈      | 알루미늄 | 동 |
| 6. 조정 주기  | 1개월     | 분기   |   |

## 7. 조정일

□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합니다.

- 조정 주기가 1개월이면 '매월 1일',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'매 분기 첫 달 10일'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 | 기 재 사 항 |
|--------|---------|
| 7. 조정일 | 매월 1일   |

-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 | 기 재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7. 조정일 |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|

-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, 조정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.

| 구 분       | 기 재 사 항 |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|
| 2. 주요 원재료 | 니켈      | 알루미늄    | 동 |
| 6. 조정 주기  | 매월 1일   | 매 분기 초일 |   |

## 8. 조정대금 반영시점

□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합니다.

- 특별약정서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| 구 분          | 기 재 사 항 |
|--------------|---------|
| 8. 조정대금 반영시점 | 매월 1일   |

| 구 분          | 기 재 사 항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8. 조정대금 반영시점 | 조정일로부터 7일 후 |

-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, 조정대금 반영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.

| 구 분       | 기 재 사 항 |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|
| 2. 주요 원재료 | 니켈      | 알루미늄    | 동 |
| 6. 조정 주기  | 매월 1일   | 매 분기 초일 |   |

## 9. 납품대금 연동 산식

□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합니다. 다양한 기재 방법이 있으며,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○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 |
|---------------|---|
| 9. 납품대금 연동 산식 | ○ 조정될 납품단가(단위: 1개)<br>=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× 동 중량(2kg) + 5,000원 |

○ 주요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,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|
|---------------|--|
| 9. 납품대금 연동 산식 | ○ 조정될 납품단가(단위: 1개)<br>=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× 동 중량(2kg) +<br>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× 철 중량(2kg) + 10,000원 |

○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특별 약정서에서 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|
|---------------|--|
| 9. 납품대금 연동 산식 | ○ 조정될 납품단가(단위: 1개)<br>=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× 동 중량 + 5,000원<br>※ 동 중량은 위탁기업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|

| 구 분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 |
|---------------|---|
| 9. 납품대금 연동 산식 | ○ 조정될 납품단가(단위: 1개)<br>=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× 동 중량 +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×<br>철 중량 + 기타 항목<br>※ 동 중량, 철 중량, 기타 항목은 위탁기업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|

-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,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|
|---------------|--|
| 9. 납품대금 연동 산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정될 납품단가(단위: 1개)</li> <li>= 직전 납품단가 + [(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-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) × 반영 비율(100%) × 동 중량(10kg)]</li> </ul> |

※ 위 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.

| 구 분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 |
|---------------|---|
| 9. 납품대금 연동 산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 동 기준가격 변동분의 100%를 납품단가에 반영</li> <li>※ 동 중량: 10kg</li> </ul> |

-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(경영정보 등 문제),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일정 비율(납품단가에서 원재료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)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 |
|---------------|---|
| 9. 납품대금 연동 산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정될 납품단가(단위: 1개)</li> <li>= 직전에 적용된 납품단가 × (1+윤활기유 기준가격의 변동률 × 단가 변동 비율(50%))</li> </ul> |

## 10. 기타 사항

- 위 항목 외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 (납품단가의 절사 기준 등)

| 구 분       | 기 재 사 항   |
|-----------|---|
| 11. 기타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납품단가 산출 시 0.01원 미만 절사</li> </ul> |

## IV.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【별첨】작성 예시

### < 작성예시 1. >

◇ 실제 운영사례를 보면, 별도 조정요건 없이(1원이라도 변경되면 조정), 변동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례 다수

###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(별첨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재사항  |
|--|---|
| 1. 물품등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 케이블(CC-001)   |
| 2. 주요 원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   |
| 3.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(전기동고시가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| 기준시점: 조정일의 전전월 (평균)<br>비교시점: 조정일의 전월 (평균)               |
| 5. 조정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모든 경우   |
| 6. 조정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개월   |
| 7. 조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월 1일   |
| 8. 조정대금 반영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월 1일   |
| 9. 납품대금 연동 산식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정될 납품단가(단위: 1개)<br>=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× 동 중량(2kg) + 5,000원 |
| 10.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품단가는 0.01원 미만 절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※ 시뮬레이션

○ '22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(조정일)이 도래:

(가정) 동 기준가격이 '21년 12월(기준시점) 10,000천원/ton에서 '22년 1월(비교시점) 12,000천원/ton으로 상승(변동률 20%로, 조정요건 충족)

➔ 조정될 납품단가 : 12,000천원/ton × 2kg(=0.002ton) + 5,000원 = 24,000 + 5,000원 = 29,000원

○ 3월 1일(조정일)이 도래:

(가정) 동 기준가격이 '22년 1월(기준시점) 12,000천원/ton에서 '22년 2월(비교시점) 13,000천원/ton으로 상승(변동률 8.3%로, 조정요건 충족)

➔ 조정될 납품단가 : 13,000천원/ton × 2kg(=0.002ton) + 5,000원 = 26,000 + 5,000원 = 31,000원

< 작성예시 2. >

- ◇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
- ◇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,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

**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(별첨)**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재사항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물품등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 케이블(CC-002)   |
| 2. 주요 원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   |
| 3.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                    | e-나라지표 주요 원자재가격동향, PP가격   |
| 4.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| 기준시점: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(또는 약정 체결일)의 전 분기(평균)<br>비교시점: 조정일의 전 분기(평균)                     |
| 5. 조정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% 이상 또는 -3% 이하   |
| 6. 조정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기  |
| 7. 조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 분기 첫 달 1일   |
| 8. 조정대금 반영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| 매 분기 첫 달 1일   |
| 9. 납품대금 연동 산식                       | 조정될 납품단가(단위: 1개)<br>= 직전 납품단가 + [(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-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) × 반영비율(100%) × 동 중량(1ton)] |
| 10.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품단가는 0.01원 미만 절사   |

※ 시뮬레이션

○ '22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(조정일)이 도래:

(가정)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: 20,000천원

동 기준가격은 '21년 4분기(기준시점) 10,000천원/ton에서 '22년 1분기(비교시점) 11,000천원 /ton으로 상승(변동률 10%로, 조정요건 충족)

➔ 조정될 납품단가: 직전 납품단가 + (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-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) × 동 중량(1ton) × 100% = 20,000천원 + [(11,000천원/ton - 10,000천원/ton) × 1ton × 100%] = 21,000천원

< 작성예시 3. >

◇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원재료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

###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(별첨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재사항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물품등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| Wire Rope(W-001)   |
| 2. 주요 원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| 경강선재   |
| 3.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                 |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 |
| 4.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시점 및 비교시점 | 기준시점: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직전 적용된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<br>비교시점: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현재 적용 중인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|
| 5. 조정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모든 경우  |
| 6. 조정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 |
| 7. 조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  |
| 8. 조정대금 반영시점                     | 조정일  |
| 9. 납품대금 연동 산식                    | 조정될 납품단가(단위 : 1개)<br>= 비교시점의 경강선재 기준가격 × 경강선재 중량(1ton) + 50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| 납품단가는 0.01원 미만 절사  |

※ 시뮬레이션

- '22년 1월 1일 수탁·위탁약정 체결 후 2월 1일 원재료 거래계약 체결, 6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:  
(가정)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2월 1일(기준시점) 500천원/ton에서 6월 1일(비교시점) 550천원 /ton으로 상승  
→ 조정될 납품단가 : 550천원/ton × 1ton + 500천원 = 1,050천원
- 9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  
(가정)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6월 1일(기준시점) 550천원/ton에서 9월 1일(비교시점) 600천 원/ton으로 상승  
→ 조정될 납품단가 : 600천원/ton × 1ton + 500천원 = 1,100천원



< 작성예시 4. >

◇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

###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(별첨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재사항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. 물품등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알루미늄 합금(A-001)  |   |
| 2. 주요 원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알루미늄  | 동   |
| 3.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                    | 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<br>알루미늄(서구산) 최고가  |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<br>LME 고시가(전기동고시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| 기준시점: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(또는 약정 체결일)의 전월 초일<br>비교시점: 조정일의 전월 초일   | 기준시점: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(또는 약정 체결일)의 전월(평균)<br>비교시점: 조정일의 전월(평균) |
| 5. 조정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모든 경우   |   |
| 6. 조정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개월   | 2개월   |
| 7. 조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월 1일   | 홀수달 1일  |
| 8. 조정대금 반영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| 매월 1일   | 홀수달 1일  |
| 9. 납품대금 연동 산식                       | 조정될 납품단가(단위: 1개)<br>= (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× 알루미늄 중량(1ton)) +<br>(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× 동 중량(0.1ton)) + 5,000,000원 |   |
| 10.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품단가는 0.01원 미만 절사   |   |

※ 시뮬레이션

○ '22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(알루미늄 조정일)이 도래:

(가정)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'21년 12월 1일(기준시점) 3,000천원/ton에서 '22년 1월 1일(비교시점) 3,300천원/ton으로 상승, 동 기준가격은 약정 체결일의 전월인 '21년 12월(기준시점)의 10,000천원/ton

➔ 조정될 납품단가 : 3,300천원/ton × 1ton + 10,000천원/ton × 0.1ton + 5,000천원 = 9,300천원

○ 3월 1일(알루미늄, 동 조정일)이 도래:

(가정)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'22년 1월 1일(기준시점) 3,300천원/ton에서 '22년 2월 1일(비교시점) 3,000천원/ton으로 하락

▶ 동 기준가격은 '21년 12월(기준시점) 10,000천원/ton에서 '22년 2월(비교시점) 12,000천원 /ton으로 상승

➔ 조정될 납품단가 : 3,000천원/ton × 1ton + 12,000천원/ton × 0.1ton + 5,000천원 = 9,200천원

## V.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방법

【첨부 2】

### 납품단가 변동표

- ◇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\* :
- ◇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:

| 조정대금 반영시점 |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| 조정된 납품단가* | 위탁기업 확인 | 수탁기업 확인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
\*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

- ◇ 구매·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

## 1.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

특별약정 체결 당시 적용되고 있는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. 물품등에 관한 단위도 명확히 표기하여 기재합니다.

(예시) ◇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: 100,000원(단위 : 1개)

○ 납품대금 연동이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.

(예시) ◇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: 10,000,000원(단위 : 약정한 납품대금 총액)

## 2.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

특별약정 체결 당시 적용되고 있는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. 이는 첫 번째 조정일의 기준시점의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.

○ 예컨대 아래와 같이 기준시점을 정한 경우, 첫 번째 조정일의 기준시점은 약정체결일 전월이므로 약정체결일이 '22년 1월 1일이라면 '21년 12월의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.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재 사 항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4.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| 기준시점: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(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)의 전월(평균)<br>비교시점: 조정일의 전월(평균) |

(예시) ◇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: 100,000원/kg

○ 주요 원재료가 여러 개일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.

(예시) ◇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: 10,000천원/ton(동), 20,000USD/ton(니켈)

### 3. 조정대금 반영시점

□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, 그 납품대금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합니다.

- 예컨대 「별첨」에서 조정일을 매월 1일로, 조정대금 반영시점도 매월 1일로 정하였고, 조정일인 '22년 1월 1일에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였다면, 이에 해당하는 조정대금 반영시점인 '22년 1월 1일을 기재합니다.

| 조정대금 반영시점  |
|------------|
| '22년 1월 1일 |

### 4.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

□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, 그 조정일 기준 비교시점의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.

- 예컨대 조정일이 '22년 1월 1일이고, 비교시점이 '21년 12월인 경우, '21년 12월의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.

|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|
|--------------|
| 110,000원/kg  |

- 주요 원재료가 여러 개일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.

|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
| 동: 11,000천원/ton    |
| 니켈: 220,000USD/ton |

## 5. 조정된 납품단가

-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, 그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. 납품대금 연동이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.

| 조정된 납품단가 |
|----------|
| 110,000원 |

## 6. 위탁기업 확인 및 수탁기업 확인

- 위 항목을 모두 기재한 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“서명” 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‘전자서명’ 포함)하거나 “기명날인”합니다.

## VI.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예시

### 납품단가 변동표

- ◇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\* : 25,000원(단위 : 1개)
- ◇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: 10,000천원/ton

| 조정대금 반영시점  |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| 조정된 납품단가* | 위탁기업 확인 | 수탁기업 확인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'22년 2월 1일 | 12,000천원/ton | 29,000원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'22년 3월 1일 | 13,000천원/ton | 31,000원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서명·기명날인 | 서명·기명날인 |

\*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

- ◇ 구매·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